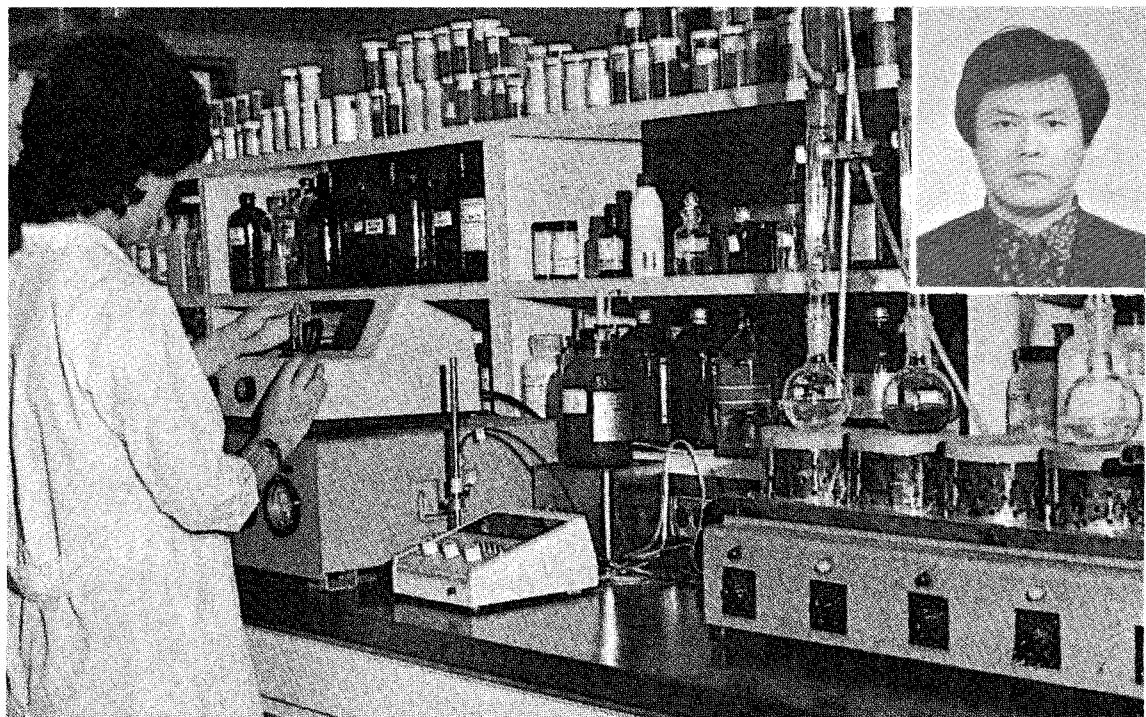


# 물질특허 개방이 동물약품

여운돈  
(제일화학영업부장, 수의사)



최근 몇년동안 동물약품업계는 물론 의약품, 농약, 정밀화학제품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지대했던 물질특허제 도입문제가 작년 7월 한미통상 협상 결과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었으며 일부에 대하여 소급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물질특허 도입에 따른 파고를 예측하기 전에 우선 '물질특허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언급하여야 하겠다.

물질특허(物質特許)라함은 의약, 농약, 화학 품 등 새로운 물질(物質)이 발명될 경우 물질자체(物質自體)에 대한 특허로서 물질의 제조공정이나 방법에 대한 특허인 제법특허(製法特許), 또한 그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用途)에 권리를 인정하는 용도특허(用途特許)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단 물질특허권을 따내면 특허료를 물지않고는 이를 생산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 국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라는 용도특허와 제법특허만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에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라도 제조공정만을 조금 변경하여 모방생산을 할 수 있었으나 물질특허가 도입되면 이러한 모방생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물질특허는 물질자체에 원천적인 권리(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그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다. 어떤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을 새롭게 개선한 사람이 이에 대한 제조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화학물질이 물질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특허를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원천적으로 물질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국내의 모방생산(me-too production)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재 국내 동물약품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당히 불리한 여건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물질특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누구를 원망해도 소용없는 난관에 처해있는 현재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충격을 최소화(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위하여 각 업체들은 힘을 합하여야 할 때가 왔다.

물론 금년 7월부터 물질특허가 도입된다 해도 당장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질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90년대 중반부터는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물질특허 관련 주요내용은 첫째, 물질특허를 포함한 특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 연장하며 둘째, 특허권자가 신

물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되 그 대상은 진보성있는 후(後)발명에 제한하며 셋째, 미국에 대해서는 쟁무협정으로 일부를 소급적용해 준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 물질특허의 도입이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동물약품업체로 하여금 신기술 연구개발투자(研究開發投資)를 강화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한 연구개발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서만이 산업의 발전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물질특허는 국내업체의 신물질 연구개발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선진국(주로 다국적기업)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신물질 포함)에 대해 국내시장에서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최신 기술의 국내유치가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이 용이하고 이에 따른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논거 이외에 우리업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다. 우선 선진국 기술에의 예속(隸屬)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동물약품업체는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소화, 개량함으로써 국산화하여 제법에 대한 기술은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물질 개발을 위한 기술 수준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종래의 제법특허제도하에서는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물질특허의 도입으로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국내 동물약품업체의 거의 대부분은 신물질 개발능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물질특허권은 외국의 기업들이 독점할 것이고 기술에서 열세한 국내업체들은 아무리 개량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는다 할지라도 외국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국내산업이 외국기업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물질을 개발하는데에는 10년이상의 기간과 5천만불에서 8천만불의 연구투자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50억원에서 80억원이상의 막대한 연구비를 10년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률은 1만불의 1정도로 극히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조합을 통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업체 몇몇이 공동투자하여 연구개발하는 방향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인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국내생산을 기피할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한 강제실시권 발동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선진국 기업과의 교섭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물질특허가 도입되면 기술사용료(Royalty)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부담가중을 예상 할 수 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물질특허가 실시된다 해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독성 검사 등을 거쳐 생산시판까지는 8~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물질특허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90년대중반 이후부터이며, 의약품의 경우 95년도 생산액을 4조7백85억원으로 추정(85년은 1조5천7백27억원)하여 원료액비율 16%, 수입원료비율 50%, 특허대상비율 30%, 기술사용료(Royalty)부담률 10%로 잡아 계산할 때 기술사용료 추가부담은 연간 1천만불(약 1백억원)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 기술에의 예속화 및 기술사용료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문제점 이외에 보다 더 큰 문제는 제조방법을 달리한 국산화가 금지됨으로써 투자 및 연구의욕이 상실되어 개발능력을 키울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동물약품업계의 매출액 규모는 85년 말 기준하여 국내 의약품시장규모의 4.2%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전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를 5조9천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내시장은 약 1.2%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약 17개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동물약품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를 8~12%로 볼 때 2천4백억 내지 4천1백억의 규모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동물약품업계의 현실은 너무나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가 있을 수 없는 바와 같이,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다.

우선 지금까지 영위하여 왔던 유사품생산판매 품토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격경쟁을 가져오고 그로인해 더욱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우기 연구개발 투자에는 전혀 눈을 돌릴 겨를이 없게 된다. 물질특허의 도입으로 유사품 생산을 못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되며, 따라서 우리 업계는 생존의 터전을 넓게 둘지도 모른다.

점차 물질특허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현재의 상황보다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고 더우기 원료가격이 고가화됨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설상가상격이 될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해적판 원료들을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에 들여올 수도 있었으나 물질특허가 적용되면 원천적으로 저렴한 원료의 수입이 봉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 땅이 좁아진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 할 수만은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총 123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물질의 약효 및 유해여부를 판가름 하는 활성(活性, Screening) 및 독성(毒性, Toxicology) 시험센터를 화학연구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약품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 연구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우기 기술개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질특허의 높은 파고를 직면해야 하는 동물약품업계는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동물약품업계는 그 돌파구로써 각사의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의 전문화 및 차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개성있는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는 정부와의 긴밀한 지원 협조체제를 공고히하여 어려운 이 국면을 슬기롭게 해쳐 나아가야 하겠다. ♪

## 마렉투인백

HVT FC126+MDV SB-1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분사 · 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면구갈리227 ☎ 수원(8) 3423/4